

발의안 제50호

2013-2014년 정기 의회의 상원 헌법 수정안 17(결의안 127장, 2014년 법령)에 의해 제안된 이 수정안은 이 법안의 한 항을 수정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명백하게 수정한다. 따라서, 삭제제를 제안하는 기존의 조항들은 황산을 그어 인쇄하고 신규 조항들은 신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탈릭체*로 인쇄한다.

제IV조 5항에 대한 수정안

이 법안의 제IV조 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판독된다.

제5항. (a) (1) 각 의회는 의원들의 자격 및 선출을 판단하여 의사록에 기재된 의원의 $\frac{2}{3}$ 가 $\frac{3}{5}$ 의 $\frac{2}{3}$ 가 동의하는 호명 투표에 의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2) (A) 각 의회는 의사록에 기재된 의원의 $\frac{3}{5}$ 의 $\frac{2}{3}$ 가 동의하는 호명 투표에 의해 채택된 발의 또는 결의안에 따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의 또는 결의안에는 정직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조사 결과 및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발의 또는 결의안의 명문에 의해 의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전체 또는 일부의 정직 기간 동안 몰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B) 이 절에 의해 정직된 의원은 정직이 발효 중인 기간 동안 그의 공직에 대한 어떤 권리, 특권, 의무 또는 권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의회의 어떤 자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C) 이 절에 의한 의원의 정직은 발의 또는 결의안에 명시된 날짜, 또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직을 종료시키는 차후의 발의 또는 결의안을 의사록에 기재된 의회 의원의 $\frac{3}{5}$ 의 $\frac{2}{3}$ 가 동의하는 호명 투표에 의해 채택하는 날짜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b) 주의회의 의원은 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 주의회는 이 호가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c) 주의회는 주의회의 의원이 이해의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선물을 받는 경우, 출처를 불문하고 그러한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d) 주의회의 의원은 주정부 위원회 또는 기관의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의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어떤 의원이 지방정부 위원회 또는 기관의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의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그가 그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고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또는 대중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이유가 있는 아조약 12항 (c)호에 설명된 어떤 법안과 관련된 조치 또는 결정을 제외하고, 그 의원은 보수를 받은 후 일 년의 기간 동안 법안에 투표하거나, 또는 법안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의 공직을 사용하여 주의회의 면전에서 조치 또는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호에서 사용된 "대중"에는 산업, 사업, 직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의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과 관련된 활동에 엄격히 자체적으로 참여하거나, 법원 또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의 면전에서 변호사의 자격으로 출석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옹호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위원회 또는 기관의 면전에서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호는 그 의원이 파트너십 또는 회사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기인한 수수료(그 수수료에 귀속된 경비는 차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e) 주의회는 1990년 12월 3일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주의회의 의원이 공직을 떠난 후 12개월 동안 주의회의 면전에서 1974년 정치개혁법(Political Reform Act)이 적용되는 보수를 받고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f) 주의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률의 집행을 강화하여, 주의회의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과 상충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해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제III조에 의한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권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다.